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서 울 고 등 법 원

춘천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춘천)2022누57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구합32659 판결
변론종결	2023. 4. 5.
판결선고	2023. 5.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3,815,790원, 지방교육세 276,763,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8. 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구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법인 구 주식회사 A 소유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마친 회원제 골프장인 ◯◯시 B 외 64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위 부동산 일체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8,534,571,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에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1천분의 15)로 산출한 취득세 1,628,018,570원, 지방교육세 325,604,710원, 합계 1,953,622,2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4.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특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57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 간의 합병으로 승계되는 등록 골프장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 지특법 제177조에서 정한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특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들고 있는데, 다만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본문의 제2문)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특법 제177조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감면제외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3)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만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취득세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다소 명확치 않아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위와 같이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4) 이 사건과 같이 조세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의 연혁과 법규 상호 간의 해석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점 조항(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는 골프장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처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감된) 세율이 적용될 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구 지특법에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자산을 양수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산출된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적격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전부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 지방세법과 구 지특법 모두 취득세상 혜택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적격합병으로 골프장을 양수하여 취득세 부과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즉 이 사건 쟁점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감면규정(구 지특세법 제57조의2 제1항)의 제1문 후단 및 제2호,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적격합병으로 취득했던 자산이 사후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골프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부분 취득세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감면규정 제1문 후단 및 제2호'와 상충·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이 사건 감면규정 제1문 후단 및 제2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 따라 구 지특세법상의 감면을 일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이 사건 쟁점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토지수용 등을 통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 감면 조항의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구 지특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져버리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구 지특세법 제73조 제2항이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어느 조항에 의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상충·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도입된 이후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입법자가 '그 취득 방법 및 유형에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치성 부동산 전부를 감면 제외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신설할 이유도 없다.

③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취득 방법 및 유형에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규정한 사치성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적용 대상으로 삼을 것이었다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이라고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함에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여기에 과세 규정, 조세감면 규정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엄격해석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문언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자제함이 적절하다.

④ 피고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1조에서도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규정의 연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조항은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도 주장한다.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에서는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분법 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종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의 부동산 등과 그 종류가 동일하기는 하다. 그런데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에서는 「"이 장"(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적용함에 있어 위 부동산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분법 전 지방세법상의 감면 규정 전부에 대해 감면제외규정인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분법 전 지방세법 "제2장 도세" 제110조 제4호에서는 법인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정이 "제2장 도세"에 위치해있는 만큼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 감면제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분법 전 지방세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법인 합병으로 인한 골프장 취득은 감면제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연혁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내지 이 사건 쟁점 조항 등에 관한 원고의 해석(즉 적격합병으로 인한 법인의 골프장 취득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인다.

⑤ 결국 이와 같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문언, 조세감면예외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지방세법과 구 지특세법상 적격합병 취득에 대한 특례 취지, 이 사건 감면규정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 및 질서, 관련 규정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만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격합병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골프장)을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감된) 세율이 적용될 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감면규정, 구 지특세법 제178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가.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 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1.12.29, 2005.12.31>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끝.